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밸류웨이40 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

□ 변경 사유 :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□ 효력발생일 : 2022. 11. 16.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	
투자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2. 9. 30.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22. 8. 31. 기준</u>	<u>2022. 10. 31. 기준</u>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22. 8. 31. 기준</u>	<u>2022. 10. 31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]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22. 8. 31. 기준</u>	<u>2022. 10. 31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 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22. 8. 31. 기준</u>	<u>2022. 10. 31. 기준</u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 (1)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가) (생략)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 (1)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가) (현행과 같음)



		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4)~9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~ ⑤(생략) 다) (생략) (2) 트러스톤 중장기 증권 모두자신탁[채권] 가) (생략)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4)~9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~ ⑤(생략)	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4)~9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로 하며, <u>금융투자업규정 제 4-54 조 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 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3 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</u>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~ ⑤(현행과 같음) 다) (현행과 같음) (2) 트러스톤 중장기 증권 모두자신탁[채권] 가) (현행과 같음)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4)~9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로 하며, <u>금융투자업규정 제 4-54 조 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 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3 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</u>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~ ⑤(현행과 같음)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의 투자제한]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의 투자제한]

		(1)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, 트러스톤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용을 적용하지 아니함. (가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),3),4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 부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~ ⑤ (생략) (나) (생략)	(1)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, 트러스톤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용을 적용하지 아니함. (가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),3),4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 부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 4-54 조 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 개월까지(법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3 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(나) (현행과 같음)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22. 8. 31. 기준</u>	<u>2022. 9. 30. 기준</u>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 개요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22. 8. 31. 기준</u>	<u>2022. 10. 31. 기준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22. 8. 31. 기준</u>	<u>2022. 10. 31. 기준</u>